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지 방 공 무 원 복 무 규 정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정친화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2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)의 경조사휴가를 주도록 하고, 소속 공무원이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11. 25. ~ 2025. 1. 6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

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한”을 “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, 한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미숙아의 범위, 출산휴가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별표 1의 출산의 일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20일 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 를 출산한 경우에는 25 일)
--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미숙아 출산에 따른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출산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) 이 영 시행

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사용기한
이 남아있는 공무원 또는 사용 중인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357